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정하려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조사의 신뢰도와 후속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안제12조의2)

나. 한국보육진흥원장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근거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1항 단서)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의 신설”(안 제26조의3제1항제4호의2)

1) 201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조항(법 제14조의2)이

신설된 후 전국의 설치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기준 의무이행률이 90.9%까지 상승함.

-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설치의무 이행 여부의 실태조사 응답으로 조사대상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행 시 제재처분의 기준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 수요 존재 여부가 조사대상이 응답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진행되고 있어,
-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이 응답하는 내용의 신뢰도가 실태조사 및 그 후속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타당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이에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사업장 내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등을 처리하여,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 등록된 아동수당 등 행정데이터와 연계·대조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보육수요의 존재여부 및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

3) 이로써 조사대상 사업장의 업장 내 보육 수요 파악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후속 처분의 효율성·타당성을 확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상승을 통한 근로자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 ----- ----- ----- ----- ----- . 다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5항-----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 지방육아종합지원센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 2. (생략)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
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
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
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
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터의 장-----

--.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5항-----

1. · 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1. ~ 4. (생략)

<신 설>

5. ~ 29. (생략)

② ·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
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
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미이
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5. ~ 2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551